



Lisette Colon-Collins, Assistant Commissioner
Office of Bilingual Education and World Languages

55 Hanson Place, Room 594
Brooklyn New York 11217
Tel) (718) 722-2445 / Fax: (718) 722-2459

89 Washington Avenue, Room 528EB
Albany, New York 12234
(518) 474-8775/ Fax: (518) 474-7948

뉴욕주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

뉴욕주 교육부(NYSED) 장관 규정 154 호에 따라 여러분에게-

영어 학습자(ELL)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 다음을 제공합니다.

1.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나 자녀의 법적 이민 지위(예를 들어, 당신 가족이 시민권자, 이민자 혹은 서류미비자인지)와 상관없이 거주지역 학군에서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당신이나 당신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당신이나 당신 자녀의 이민 지위를 드러내야 하는 정보나 서류를 보여야 하는 일 없이 당신 자녀를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누구도 사회보장 번호나 카드, 이민 비자 혹은 비자 상태, 시민권 관련 서류, 시민권 상태 등을 물어보지 못합니다.
3. 학군 관계자와 상대할 때 당신이 편한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통역/번역인을 제공하도록 연방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4. 가정언어/제 1 언어가 같은 학생이 같은 학년에 20 명 이상일 경우 이중언어 교육(BE)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신 자녀가 영어학습자(ELL)로 지정되고 이중언어 교육이나 영어를 새언어(전에 ESL 이라고 불리던)로 배우는 프로그램에 배치된다면 학교에서 보내는 편지 등을 영어와 당신이 편한 언어로 받을 수 있는 권리.
6. 뉴욕주 기준, 시험, 영어학습자에 대한 학교의 기대치 뿐아니라 프로그램의 목적, 이중언어교육과 새언어로서의 영어학습에 필수 요건 등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학군에서 제공받을 권리. 이 오리엔테이션은 최종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신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7. 당신의 자녀가 영어를 배우는 진전상황 정보를 받을 권리. 또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있다면 가정언어의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8. 다른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미팅 이외에 당신 자녀의 전반적인 학습과 언어 발달 과정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미팅을 일 년에 최소한 한번은 학교 관계자와 만날 수 있는 권리.
9. 학교 등록 후 10 일 내에 당신 자녀가 이중 언어 교육이나 새언어로서의 영어반에 배치될 수 있는 권리와 이중언어 교육에서 빼낼 수 있는 권리. 최소한 당신의 자녀는 새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은 받아야 합니다.
10. 당신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없으면 당신의 언어로 행해지는 이중언어 교육이 있는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갈 수 있는 권리.
11. 졸업에 꼭 필요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학교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령에 적절하고 학년 수준에 적합한 학군이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
12.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언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등의 모든 주요 과목을 배울 권리.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주요 과목 학습에서 배워야 할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3. 모든 과외 활동(방과후 클럽, 운동 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영어학습자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4. 학교나 학군에서 제공하는 학업 중재 서비스(AIS)와 같은 도움을 받을 권리.
15. 영어 언어 진전상황을 결정하는 연례 시험을 치를 권리와 뉴욕주 시험을 포함한 당신 자녀의 학업 평가 시험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6. 영어학습자로 남아있는 한, 해마다 계속해서 이중언어 교육이나 새언어로서의 영어반에 남아있을 수 있는 권리.
17. 상기의 어느 권리라도 침해당했다고 여겨지면 뉴욕주 이중언어 세계언어국으로 연락할 권리.

영어학습자 학부모 핫라인 1-800-469-8224 으로 전화하거나 nysparenthotline@nyu.edu 로 이메일 하십시오.

더 알고 싶으시면 www.p12.nysed.gov/biling 를 방문하시거나 뉴욕주 교육부 이중언어 교육 세계언어국으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Bilingual Education & World Languages
55 Hansen Place, Room 594
Brooklyn, NY 11217

1 뉴욕시에서는 아스피라 판결로 같은 언어를 말하는 학생이 두 학년 합해서 15 명 이상이면 유치원부터 8 학년 까지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의무적입니다. 한 학교에 자격에 되는 학생 수가 부족하나 그 학군 내에 다른 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학군이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든 영어학습자는 “새언어로서의 영어”반을 통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모국어 교육도 받습니다. 주요과목(즉, 수학, 과학, 사회과)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에서 영어와 자기네 가정언어로 배웁니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주요 과목을 영어로 배웁니다.